[별표 18]

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(제71조제1항제17호관련)

1.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(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. 다만,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)
   가.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
   나.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초등학교
   다.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중 동호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것
2.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(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. 다만,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)
   가.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(휴게음식점을 제외한다)
   나.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(동호 나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및 단란주점을 제외한다)
   다.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종교집회장
   라.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
   마.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동호 사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것과 중학교·고등학교
   바.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(농업·임업·축산업·수산업용에 한한다)
   사.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
   아.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동호 가목 및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
   자.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(동호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)
   차.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